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13

제출년월일 : 2003. 3

제 출 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던 사무를 건축법시행령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읍면동 위임 사무를 본청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연신고” 외 9개사무 삭제

- 총무과 소관 “문서 보관관리” 외 1개사무 수정

3. 참고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중 권한의위임 삭제
[대통령령 제17926호(03. 2. 24)]

김제시조례 제 호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중 [별표] 권한위임사무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 한 위 임 사 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1	소속공무원의 출장명령	시조례	
2	통·리행정 지도·감독	행정지시	
3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행정지시	
4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시조례	
5	문서보관 관리	기록물관리법 제11조	
6	읍·면·동 6급 이하공무원 관내 전보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행여사망자 통보	행정지시	
8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	시조례	
9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매·화장신고 -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4조	
10	농약공급	식물방역법 제23조제2항	
11	수도묘판재배 관리 및 선전계동	식물방역법 제23조제2항	
12	시유농기계류 관리	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13	입산신고(읍·면에 한함)	산림법 제98조,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권한위임사무			[별표] 권한위임사무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1	공연신고(읍.면에 한함)	공연법 14조	1~4	〈삭제〉	〈삭제〉
2	음반판매업에 관한사무 및 음반 판매업자 지도감독	음반에 관한 법률 제11조	5	〈삭제〉	〈삭제〉
3~6	(생략)	(생략)	6	〈삭제〉	〈삭제〉
7	인감에 대한 제반사항(동에 한함)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조	7~8	〈삭제〉	〈삭제〉
8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폐기문서처리규정	9	문서보관 관리	기록물관리법 제11조
9	(생략)	(생략)	10	〈삭제〉	〈삭제〉
10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해정지시	11~12	〈삭제〉	〈삭제〉
11~12	(생략)	(생략)	13	〈삭제〉	〈삭제〉
13	(생략) (생략) (생략)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신고 -무연분묘 개장 허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권한위임사무			[별표] 권한위임사무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 률
14~15	(생략)	(생략)	10~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시유농기계류 관리	시 재무회계규칙 제117조	12	(현행과 같음)	김제시양수기 운영관리조례
17	시장(공설사설) 지도관리 (읍면에 해당)	행정지시	※제	〈삭 제〉	〈삭 제〉
18	수산제조업 신고 (진봉면에 한함)	수산업법 제45조 및동법시행령제49 조의2	※제	〈삭 제〉	〈삭 제〉
19	내수면신고업	내수면어업개발촉 진법제9조 및동법 시행령제39조제3 항제3호	※제	〈삭 제〉	〈삭 제〉
20	신고어업 허가	내수면어업개발촉 진법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 제3항제1호	※제	〈삭 제〉	〈삭 제〉
21	신고어업	수산업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제	〈삭 제〉	〈삭 제〉
22	입산허가(읍.면에 한함)	산림법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13	입산신고(읍면에 한함)	(현행과 같음)
23	건축법에 의한 다음의 신고 사항 -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중 축조신고의 처리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	〈삭 제〉	〈삭 제〉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뛰자

김 제 시

우) 576-020 /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 전화 063-540-3895 / FAX 540-3182
도시건축과 과장 김인수 건축담당 안진현 담당자 허민

문서번호 도건 58551 - 396

시행일자 2003. 03. 6.

경 유

수 신 총무과장

참 조

선 랐	과장	2003.3.6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3.3.7	결 재	사무실 2층
	번호	451		
	처理과	총무과	· 공	
	담당자	나경숙	람	
	심사자		심사 일	

제 목 조례개정 의뢰

1.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권한의위임이 삭제됨에 따라 김제시 사무의 읍 면.동 위임조례 제2조 별표의 23번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련번호	개 정 전	개 정 후
23	건축법에 의한 다음의 신고사항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 등 공작물중 축조신고의 처리	삭제

첨 부 : 건축법시행령 사본 1부. 끝.

김 제 시



나.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명칭·사업의 목적 및 공사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하되,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안내시키도록 함(영 제4조제1항).

다.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등의 행위로 정함(영 제5조제1항).

라.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점에 대한 시험용 표지판 등은 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무사항을 정함(영 제8조 내지 제16조).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영 제20조 및 별표).

〈부세서 제8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장관

임인택

제2007년 7월 26일

건축법시행령증개정령

건축법시행령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 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제2항 제2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단지주택용 단지주택·도시생활시설·학원·독서실·인쇄·제작·설비설·인수설”로, “아동·시설·노인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치선거리 20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제2호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균형 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아동관련시설”은 “학원·아동관련시설”로 하고, 통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종 균형 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문화 및 접회시설 중 예식장·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위탁시설 중·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통·주점영업을 제외한나)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86조의2의 제6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8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통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통조 제2항 내지 제4항(총전의 제1항 내지 제3항) 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재해구역)”이 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

시사”로 하며, 통조 제4항(총전의 제3항) 중 “건축조례”를 “특별시·광역시장 또는 도

시·군·군·군·건축조례”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① 법 제5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 침수·홍수·산사태·해일·도사·폭우·제1형 풍랑·온오류·안하야·제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균형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소형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균형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균형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낭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세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낭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3. 2. 24. (월요일)

부 칙

●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1995. 2. 4.
조례 제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권한위임사무)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

(별표)

권 한 위 임 사 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1	공연신고(읍·면에 한함)	공연법 14조	
2	음반판매업에 관한 사무 및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읍·면에 한함)	음반에관한법률 제11조	
3	소속공무원의 출장명령	시조례	
4	통·리행정 지도·감독	행정지시	
5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행정지시	
6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시조례	
7	인감에 대한 제반사항(동에 한함)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조	
8	문서 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보고)	폐기문서처리규정	
9	읍·면·동 6급이하공무원 관내 전보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행정지시	
11	행여사망자 통보	행정지시	
12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	시조례	
13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매·화장신고 - 개장신고 -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 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 - 무연분묘 개장 허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14	농약공급	식물방역법 제23조제2항	
15	수도요판매배 관리 및 선전계몽	식물방역법 제23조제2항	
16	시유농기계류 관리	시 재무회계규칙 제117조	

(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17	시장(공설·사설) 지도관리(읍·면에 해당)	행정지시	
18	수산제조업 신고(진봉면에 한함)	수산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19	내수면신고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 제3호	
20	신고어업 허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제1호	
21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2	임산허가(읍·면에 한함)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02조	
23	건축법에 의한 다음의 신고사항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중 축조신고의 처리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대)